2004. 9. 15(수) 10:00 제113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

조 레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 ②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 ③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9. 7

○ 제 출 자 : 이현영 의원외 7인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2004 - 44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정부에서 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야생동 물을 먹는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등 야생동물보호 일변 도의 강화정책으로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안정적인 농 업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등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 하여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피해지원대상은 야생동물(포유류, 독사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로써 지원대상자는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고, 지원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가 발생 한 것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함.(안 제2조~제3조)

- 피해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고에 의하되(3일이내) 피해 현장 사실확인은 이장과 피해농민 입회하에 군수가 실시토록 하고 피해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등으로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 산림작물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농업생 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는 지 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
- 피해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등을 결정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치료비 10만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지원액은 5백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에의한 피해로 인한 사망시에는 최대 1천만원으로 하되 노동력등을 감안 차등결정토록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조례제정의 필요성]

○ 우리 거창군은 덕유산과 큰 산을 끼는 산간지방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훼손하기 일쑤며, 특히 멧돼지는 습성상 5~10마리씩 집단생활을 하기때문에 번식이 강해 농작물과 과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까지 공격하여 인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농작물보다 야생동물 보호에 우선하며, 양서류 및 파충류도 포획을 금지하며, 심지어 이를 먹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야생동·식물보호법령에서는 야생동식물로부터 피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전국최초로 의원발의로 야생동물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지역농민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처라고 판단됨.

- 조례안 세부사항

O 명칭중 "피해지원"으로 규정

피해에 대하여 "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원인을 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며, 보상으로 할 경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시에도 보상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로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제1호 : 피해대상 동물등의 규정

피해야생동물중 포유류는 멧돼지뿐만 아니라 늑대, 곰, 살쾡이 등의 맹수류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며, 독사류까지 포함한 것은 포유류에 의한 피해발생(최근 1건: 멧돼지)보다 지역농민들이 영농활동 과정에서 독사에 의한 피해가 매년 20~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독사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포함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상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제2호, 제3호 : 농업인, 농업생산활동의 규정

농업인 및 생산활동의 범위를 농업·임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까지로 확대한 것은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는 농·임업뿐만 아니라 축산부문에서도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며, 보상대상 주민요건을 세대주외에그 구성원으로 한 것은 가족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농업인에 대하여는 조례로써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곤란하여 언급치 아니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제정시 관련법률등에 의거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안 제3조(보상대상 요건)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군은 산악지대로 불특정다수군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에 있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피해신고)

피해신고일을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사고발생후 장기간 경과후 신고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기간이내 신고토록 규정한 것으로 통상 3일정도의 기간을 주면 신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O 안 제5조(피해액 산정)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시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일부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원하도록 한 것이며, 치료 비등으로 규정한 것은 부상시 치료비외에도 목발등의 보조기구가 필요 할 경우 이의 범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O 안 제6조(지원제외)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외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원활한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소속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은 피해 지원 심의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대상자는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O 안 제8조(지원금의 지원)

치료비의 경우 지원금의 범위를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은 영농활동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독사류에 의한 피해발생시 통원치료가 용이할 정도로 가벼울 경우 8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나 입원치료시는 15~25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최소 범위를 1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며, 지원최대금액은 5백만원으로 정한 것은 재난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수준으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가

단서조항의 야생동물등에 의한 사망시 노동력등을 감안 최대 1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재난발생시 사망위로금을 최대1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참고로 하여 설정한 것이며, 재난위로금의 경우처럼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분치 아니하고 노동력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토록 한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됨.

(100%)

- : 500 / , 250 /- : 1 /具, 500 /具

○ 안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 규칙으로 규정토록함으로써 집행부의 역할을 제고시킬뿐만 아니라 위원회심의 등 제반사항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O 기타 법률등 저촉여부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나 상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한 것이나 조레형식이나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집행부 의견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 : 2004. 9. 6
-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변경요구: 미반영(별도 규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임) 임업과 축산업 분야는 제외되며, 농지 1천㎡, 연간판매액 1백만원, 연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대상을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 : 반영
 - 신고시기를 규정하지 않도록 함 : 미 반영 신고시기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과다한 시간 경과후 신고시 확인곤란
 -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 : 반영
 -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액 최대보상금으로 규정 : 미 반영

5.

第12條(·)	가	
가 ·				26 ·	
1. 27 2. 33 3. 4. 5. 6. 7.	18 8	•			
7 ()	-2004. 8. 11(2004-102)	
1.		:		•	•
o 3 (3 1) "			" 1	
1. 1	•	(83)	
2. 3. 1 90			100	00	

2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9. 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 2004 - 40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직접 수혜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나. 주요골자

- 군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군수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자 5인이상, 수혜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안 제4조)

-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의 농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을 가진 자로 규정함(안 제7조)
-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해복구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 및 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 하거나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경비부과에 이의가 있는 계원은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수리계의 해산요건으로 제4조의 기준미비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례의 내용중 주민의 부담을 주는 경비부담안인 제11조 규정은 농어 촌정비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2003.11.28 입법예고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가 지칭하는 수리계는 1998. 3.12 제정된 경상남도수리계관리 조례(2002.8.14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던 것으로 당시 조례의 내용에서도 수리계의 조직, 등록, 예산 및 인력지원, 부과금액 승인 및 조정, 지도감독 등의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음.(조례 제17조) 따라서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전의 수리계 조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
 - 이에 종전의 수리계 조직이 그대로 인정 유지될 수 있도록 거창군수리계 관리조례안의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것임.
- 현재 조직된 거창군내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는 105개로서 4,440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4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은 57,400천원(국비27,400, 군비30,000)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수리계의 적립금 총액은 169,605천원임.
- 동 조례제정의 근거조항인 농어촌정비법 제108조가 개정된 것이 2002.12.26 로서 법개정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례제정이 지연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수리계) ·

_____11

· 가

3 가 .

. 4

[2002·12·26] <2002·12·26 法律第6819>

5 () 農業基盤公社 農地管理基金法

. .

· 가

가 <u>108 4</u> 100 3 . [2002・12・31]

53 () 108 2 1 1. 가. 가 5 5 2. 가. 가 3. 가. 2 2 1 가

2 ()

法 用語 定義

1. "農業基盤施設"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 規定 農業生産基盤施設

2. "公社管理地域" 農業基盤公社가 農業基盤施設 敷地 農業基盤施設

農業用水 供給 地域

③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9. 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 2004 - 41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요금 자동납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자동 납부시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군수는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해 납기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조례안 제38조의2 조항신설)

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공요금 자동납부제(자동이체)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장기출타등으로 납기경과시 가산금을 부과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체납방지와 적기에 요금징수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등 주민과 행정에서 공동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는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체 수용가의 20%정도(요금기준시 12.7%)가 이용하고 있으나 요금할인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요금할인제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시책 이라고 판단되며, 할인율을 적용하면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상수도 요금의 자동납부제 할인율 적용시 2003년도 기준으로 볼때 1,510백만원으로 연간 15백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상하수도운영 재정여건을 볼 때 할인요금제 시행은 향후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요금할인제 적용시 재정운용상의 차질 여부와이와 관련하여 요금인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제한한 것은 부과금액이 월50만원 이상 이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50만원이상 납부대상자는 대부분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공서, 학교시설, 일반목욕탕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 월 5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월 50만원이상 부과자는 가정용 20건, 일반용 13건이나 전체 부과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에 이르러 1%할인율

적용시 최대수혜금액이 월별 최대4만원, 연간 약50만원에 달하게 되며, 상위 33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540만원, 연간 6,440천원 정도에 달하여 지나치게 할인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실과 사전 조례안 검토시 지나치게 할인되는 문제점과 고액 납부자 대부분이 체납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할인율 한도액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이같은 이유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자동납부제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할인한도액을 5천원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도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할인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국에서는 전화요금 자동납부자에 대하여 1%할인율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자료

□ 2003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コ 日	<u>)</u>	비고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비고
계	1,903,960	1,510,273	393,687	
거창읍	1,791,444	1,439,893	351,551	
가조면	112,516	70,380	42,136	

: 158,663 (125,856 , 32,807)

□ 2003년도 자동납부 현황

ネ ユヘコム	자동납부 전수(전)			자동납부액	자동납부율
총 급구선수	계	거창읍	가조면	(천원)	(%)
5,902	1,187	987	200	242,354	20.1

□ 업종별 주요 부과내역(2004.7월고지분 기준)

○ 가정용

부과대상	사용량(톤)	부과액(원)	비고
대경아파트	7,370	4,339,750	
대우아파트	6,700	4,128,370	
주공아파트(2차)	6,557	3,861,690	
주공아파트(3차)	6,370	3,750,120	
주공아파트(1차)	5,988	3,527,130	

○ 일반용

군청	1,745	2,252,590	
거창경찰서	1,685	2,172,550	
거창전문대학	1,375	1,759,010	
거창대성고교	1,057	1,333,340	
적십자병원	897	1,111,030	

○ 대중탕용

선보	프라자	572	575,700	

□ 500,000원이상 부과내역

어조H	부고	비고	
업종별	건수	금액(원)	비고
계	33	53,670,430	월평균 전체부과액의
가정용	20	38,390,590	
일반용	13	15,279,840	약 30%

4 거창군하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4. 9. 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9. 9

다. 의안번호 : 제 2004 - 42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산정기준을 기존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 하수도요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요금 자동납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자동납부시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원인자부담금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라는 문구삽입
- 군수는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해 납기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조례안 제18조의2 조항신설)

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 이전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담금산정에 대한법리 해석 착오로 최근 대법원판결이 있음에 따라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산정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04.4.12)

"

"

10 2 (99.8.9)

우리 거창군에서는 조례 개정 전에도 건물 증축 시에는 대법원판 례처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환불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부담금산정 및 징수에도 변화되는 사항은 없음.

- 공공요금 자동납부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같은 내용이므로 검토의견 작성을 생략함.
-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 (水洗式化粧室 設置 者 單獨淨化槽 設置 . , 各號 1 . <改正 99·2·8> 汚水 <u>第9條</u> 規定 汚水處理施設 流入 1. 水洗式化粧室 汚水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 下水道法第2條 規 2. 水洗式化粧室 定 下水終末處理施設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 規定 廢水終末處理施 設 流入 (下水終末處理施設 廢水終末處理施設 設置 設置豫定 地域 汚水 同施設 流入 ,同施設 流入‧處理時點 建物 施設物 竣工豫定時點) 第1項 規定 單獨淨化槽 設置 大統領令 者 環境部令 市長·郡守·區廳長 申告 單獨淨化槽 閉鎖 . <改正 99·2·8> 10 2() 建物大統領令 增築 用途 大統領令 用途 汚水 量 가 建物 所 建物 有者 <u>第9條</u> <u>第10條</u> 規定 汚水處理施設 單獨淨化槽 設置 汚水處 理施設 單獨淨化槽 處理容量 增大 . 汚水發生量 環 境部長官 告示 . [本條新設 99.2.8]